

파주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☐ 개정이유

-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가.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변경 (안 제8조제3항제1호)

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“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”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☐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(2000. 10. 1)됨으로 인해 동 조례안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